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a href="http://www.daedeok.go.kr">http://www.daedeok.go.kr</a>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1-75호**  
**2021. 9. 24.(금)**

## 차 례

### 고 시(3)

- 도시계획시설(새뜸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고시 제2021-93호) 1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기간연장) 허가 고시(고시 제2021-96호) ..... 3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1-97호) ..... 4

### 입법예고(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967호) 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969호) 11
-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970호) 18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971호) · 3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972호) · 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973호) · 50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975호) · 55

공 람									
--------	--	--	--	--	--	--	--	--	--

## 도시계획시설(새뜸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여 공원이용자 안전 및 편익을 증진시켜 주민소통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새뜸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실시계획 작성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덕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 등에게 보여드립니다.

2021년 9월 2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22-5번지 (새뜸어린이공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 2) 사업의 명칭: 새뜸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다. 사업 시행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 (오정동)

라. 사업의 근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마.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적: 7,338.7m<sup>2</sup>

나) 규모: 공원 리모델링 1식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03.(예정)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계				7,338.7	7,338.7	-	-	-	-	-
1	덕암동	22-5	공	7,338.7	7,388.7	대전 대덕구	-	-	-	-

아. 실시계획 조서

구분	부지면적 (m <sup>2</sup> )	구성비 (%)	건축규모 (m <sup>2</sup> )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합계	7,338.7	100	145.85	150.45	
시설소계	3,472.5	47.32			
도로 및 광장	소계	2,373.3	32.34		
	도로	1,149.8	15.67		
	광장	1,223.5	16.67		
휴양시설	508.9	6.98	121.76	126.36	
유흥시설	389.2	5.30			
운동시설	111.2	1.52			
편익시설	73.2	1.00	24.09	24.09	
관리시설	16.7	0.23			
녹지	3,866.2	52.68			

자. 관계도서: 게재생략(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덕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 끝.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기간연장)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피허가자	소재지	지목	지적(㎡)	변경허가 내용			
					목적	점유 면적(㎡)	허가기간	
							당초	변경
2021-03호 (2021.09.23.)	손영배	읍내동 543-1	구거	2,236	진입로	30	'16.11.22.~ '21.11.21.	'21.11.22.~ '22.11.21.

끝.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소	도 로 명 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석봉동 423-4	대덕대로1593번길 9	2021. 9. 24.	건물신축	대덕 대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5,9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개정이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심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 위임 사항을 전면 정비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나. 위원회의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다.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부터 안 제7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14일까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방법: 서면, 직접방문,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1) 서면, 직접방문: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여성가족과

2) 전 화: 042-608-6561

3) F A X: 042-608-3836

4) 이메일: [tinggigi@korea.kr](mailto:tinggigi@korea.kr)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가족과 담당자 김윤정(전화 042-608-656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회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주차장조성기금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기금과 타 회계 간 전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함.
- 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주차장조성기금과 타 회계 간 전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 신설).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 10.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교통과(전화: 042-608-5293, FAX: 042-608-3845, E-mail: ritzo101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과 담당자 김해준(전화: 042-608-529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기금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주차장조성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덕구주차장조성기금관리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11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기금의 운용)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대덕구주차장조성기금관리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p> <p>-----</p> <p>-----</p> <p>-----</p> <p>-----</p> <p>제4조(기금의 운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기금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u></p> <p>제5조(주차장조성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p> <p>-----</p> <p><u>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관리위원회</u>-----</p> <p>-----</p> <p>②-----</p> <p>-----</p> <p>-----</p> <p>-----</p> <p>----- <u>사람</u> -----</p> <p>-----</p> <p>-----</p>

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각 기금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실  
· 단 · 과장

2. 3. (생략)

③ (생략)

제7조(회의) ① · ② (생략)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출  
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교  
통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② (생략)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의 예에 의한다.

-----.  
-----  
-----  
-----.

1. -----  
----- 실  
· 과 · 단장

2.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개의(開議)-----  
-----  
-----.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  
-----  
-----  
-----  
----- 사람으로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  
-----  
-----  
----- 따른다.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의2(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1호)

#### 4.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 작성기준

가. (생략)

나. 지출계획 작성기준

※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성 상,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 가능함에 유의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고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조례와 일치하도록 띄어쓰기 함(안 제명).

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기능의 확대에 따라 심의 요구 시 필요한 관련 서식을 정비함(안 제5조 및 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다. 규칙 시행에 따른 미비한 서식을 정비함(안 별표, 안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봉사과(전화: 042-608-6713, 팩스: 042-608-3825, 이메일: ilmozart@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봉사과 담당자 전용립 (전화: 042-608-67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정보공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호”를 “뜻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주관부서”라 함은”을 ““주관부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을 “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라 함은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을 “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으로, “공개사무”를 “공개 사무”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정보공개사무”를 각각 “행정정보공개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청구된”을 “공개 청구된”으로, “보존중

인”을 “보존 중일”로, “해당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공개 여부”로 한다.

제4조 중 “매체기록등”을 “매체기록 등”으로, “고무인”을 “원본대조필인”으로, “간인”을 “간인(間印)”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의회에 안건을 회의에 부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요구서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③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조례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4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대장을”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원본대조필인** (제4조 관련)

9cm

원 본 대 조 필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cm



## 행정정보공개 여부 심의요구서

1. 심의안건		
2. 청구인	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주소(소재지) 및 연락처	
3. 정보공개 청구내용		
4. 공개 여부 관련 처리부서 의견		
5. 결정(심의)을 필요로 하는 사항		
6. 그 밖의 사항		
첨부 : 1) 청구서 사본 부 2) 심의 관련 자료 사본 부 3) 그 밖에 관련 법령 등 참고자료 부		
○ ○ ○ 장 (서명 또는 날인)		

## 행정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요구서

1. 청구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주소(소재지) 및 연락처	
2. 정보공개 청구내용		
3. 공개·비공개 결정내용		
4.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		
5. 처리부서의 의견		
6. 결정(심의)을 필요로 하는 사항		
<p>첨 부 : 1) 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사본 각 ○부 2) 심의 관련 자료 사본 ○부 3) 그 밖에 관련 법령 등 참고자료 ○부</p> <p style="text-align: center;">○ ○ ○ 장 (서명 또는 날인)</p>		

##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관련 심의요구서

1. 심의안건	
2. 상정사유	
3. 상정부서의 검토의견	
4. 개선(심의)을 필요로 하는 사항	
5. 그 밖의 사항	
<p>첨 부 : 1) 심의 관련 자료 사본 ○부 2) 그 밖에 관련법령 등 참고자료 ○부</p> <p style="text-align: center;">○ ○ ○ 장 (서명 또는 날인)</p>	

##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심의일시		심의장소 (방법)					
심의안건							
의결내용							
사    유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직위	성명	서 명(날인)		직위	성명	서 명(날인)	
		가	부			가	부

##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서기	간사	부위원장	위원장	결 재
일 시					장소 (방법)				
참석현황	정원	참석	불참	불참위원					
안 건									
심의내용									
심의결과									
※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대장

접수		심의안건	심의		처리 부서	비고
번호	일시		일시	결과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대전광역시대덕구</u> <u>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정보공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주관부서”라 함은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p> <p>2. “접수부서”라 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p> <p>3. “처리부서”라 함은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기관으로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p>	<p><u>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u> <u>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 -----.</p> <p>제2조(정의) ----- ----- 뜻은 다음 각 호----- ----.</p> <p>1. “주관부서”란 ----- ----- -----.</p> <p>2. -----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p> <p>3. -----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 공개 사무-</p>

한다.

제3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민원봉사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접수부서는 민원봉사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청구된 정보가 문서 보존부서에 보존중인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문서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문서를 대출받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방법) 처리부서의 장이 문서·도면 또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기록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때에는 처리부서 담당자는 별표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 간인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요청)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처리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정

--.

제3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① ----- 행정정보공개 사무-----  
-----.

② ----- 행정정보공개 사무-----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개 청구된 -----  
--- 보존 중일 -----  
-----  
---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공개 여부-----.

제4조(공개방법) -----  
-----  
----- 매체기록 등-----  
-----  
-----  
-----  
-----  
-----  
----- 원본대조필인-----  
----- 간인(間印)-----  
--.

제5조(심의요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의회에 안건을 회의에 부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보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조(기록유지) ① 간사는 심의 회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심의요구서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기록유지) ① -----  
-----  
----- 별지 제4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대장을 ---.

② (현행과 같음)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생활폐기물 종류에 따른 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종량제봉투판매소 판매수수료율을 조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소상공인 판매수익 보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종류에 따른 배출방법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0조).

나. 영세상인의 카드 수수료 등 부담완화를 위해 종량제봉투판매소 판매수수료 요율을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변경함(안 별표 3).

다. 변경된 제명을 현행화 하는 등 별지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안 별지 제10호서식까지).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후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후환경과 (전화: 042-608-6832, FAX: 042-608-3834, E-mail: ksj6150@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환경과 담당자 김수진 (전화: 042-608-68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배출량 미만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일반폐기물: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 당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일요일 오전 3시까지는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특수규격봉투에 담은 후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고한 동별 수거일정에 맞추어 배출자 집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나 구 홈페이지에

서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대형폐기물스티커”라 한다)을 구입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상태로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고한 동별 수거일정에 맞추어 배출자의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 가능 폐기물: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고한 동별 수거일정에 맞추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속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5. 가정용 연탄재: 종량제봉투가 아닌 속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 당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일요일 오전 3시까지는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② 폐기물을 50리터 이상의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종량제봉투별 무게 상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

2.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

③ 배출자는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나 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소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3 하단의 주) 5)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

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p> <p>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배출량 미만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집 앞이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당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은 일요일휴무로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을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p> <p>1. 대형폐기물: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나 구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수거</p>	<p>제10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p> <p>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배출량 미만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p> <p>1. 일반폐기물: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 당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일요일 오전 3시까지는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p> <p>2. 공사장생활폐기물: 특수규격 봉투에 담은 후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고한 동</p>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대형폐기물스티커”라 한다)을 구입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상태로 배출자의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전용마대에 각각 담은 후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 가능 폐기물: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고한 동별 수거일정에 맞추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속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는 폐기물을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나 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소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삭 제

별 수거일정에 맞추어 배출자 집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을 영업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나 구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대형폐기물스티커”라 한다)을 구입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상태로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고한 동별 수거일정에 맞추어 배출자의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 가능 폐기물: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고한 동별 수거일정에 맞추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속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⑤ 삭 제

5. 가정용 연탄재: 종량제봉투가 아닌 속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 당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일요일 오전 3시까지는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② 폐기물을 50리터 이상의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종량제봉투별 무게 상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
2.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

③ 배출자는 폐기물을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나 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소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개정이유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추진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늘리고, 구속형 문구를 사용하는 등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문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1호).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중 비차별 요소를 추가함(안 제4조1호).

다. 아동권리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 및 홍보,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권리 옹호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구속형으로 변경함(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27조).

- 라. 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및 아동권리 옹호관의 임기에 연임사항을 추가함(안 제19조, 안 제28조제3항).
- 마.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함(안 제21조제1항).
- 바. 아동의 구정 참여권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해 임시기구인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의 활동을 해단 시까지로 하고, 상설 아동자치기구인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14일까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방법: 서면, 직접방문,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등

#####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서면, 직접방문: (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덕구청 여성가족과
- 2) 전화: 042-608-6567
- 3) FAX: 042-608-3836
- 4) 이메일: aja0310@korea.kr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가족과 담당자 김기석 (전화 042-608-65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대덕구”를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1호 중 “아동이 성별, 인종”을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로, “신체조건”을 “재산, 신체조건, 장애유무”로, “차별을”을 “차별도”로, “동등한”을 “같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을 “구민”으로 한다.

제6조 중 “미치는”을 “주는”으로 한다.

제13조 중 “대한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대한”으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를 “구 의회”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1회”를 “2회”로 한다.

제4장(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장 아동참여위원회

제24조(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의 구정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설 아동자치기구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아동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응대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4.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 요청하는 사항

제25조(구성)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권역별, 연령별,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아동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2.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3. 관내 학교 밖 청소년 중 18세 미만인 아동

②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회의 위원장과 아동위원회의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2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아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아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아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 중 “위촉·운영할 수 있다”를 “위촉·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



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밖”을 “그 밖”으로, “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활동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의 활동은 해당 시까지로 한다.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건

개정안 내용	의 건	비 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시행 2022. 1. 13.)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자가 구청장에서 의회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였던 관련 사항을 삭제함.(안 제1조 및 제2조, 현행 별표 1 삭제).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 10.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및 보내실 곳

- 1) 서면, 직접방문: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 2) 전화: 042-608-6044
- 3) FAX: 042-608-3811
- 4) E-mail: song80@korea.kr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전화: 042-608-60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4조”를 “제117”로, “대덕구의회사무과장, 보건소장, 사업소장,”을 “대덕구 보건소장·사업소장 및”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대덕구의회사무과장, 보건소장, 사업소장,”을 “대덕구 보건소장·사업소장 및”으로 한다.

제2조 중 “대덕구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을 “대덕구”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3의 문화관광체육과의 근거법령 및 자치법규란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사무과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보건소장·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 ----- ----- 대 덕구 보건소장·사업소장 및 ----- ----- ----- ----- ----- -----.</p> <p>제2조(위임사항) ----- ----- ----- ----- 대덕구 ----- ----- ----- ----- ----- -----.</p>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고 (제출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공동주택 주거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 시설보수 비용의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이름과 조 번호를 띄어쓰기 함(안 제1조 및 안 제3조).
  - 나.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보수”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11호).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주택정책과(전화: 042-608-4162, FAX: 042-608-3843, E-mail: hwikeun123@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택정책과 담당자 김희근 (전화: 042-608-41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조제10호 중 “그 밖에 재난·재해”를 “재난·재해”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보수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동주택관리법</u>」 제8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공동주택관리법</u>」 제85조----- ----- ----- ----- ----- ----- -----.</p>
<p>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행정구역 안에서 「<u>공동주택관리법</u>」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p> <p>② (생략)</p>	<p>제3조(적용 범위 등) ① ----- ----- ----- 「<u>공동주택관리법</u>」 제2조제1항제1호-----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 9. (생략)</p> <p>10. <u>그 밖에 재난·재해로 인하여 안전상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 보수</u></p> <p><u>&lt;신 설&gt;</u></p>	<p>제4조(지원대상) ----- ----- ----- -----.</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u>재난·재해</u>----- ----- -----</p> <p>11. <u>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보수</u></p>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